

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

•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'○' 표시를 합니다.

운영기관	정선군	심의일자	2024-10-05
건축종별	[] 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] 기타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이삼걸	* 여러 명인 경우 ○○○외 ○명으로 적습니다	
대지현황	대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고한읍		
	지번 102 - 3	관련지번 3	
	대지면적 6503 m ²	용도지역(지구,지역)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,지구단위계획구역,개발진흥지구,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,계획관리지역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 2104.11 m ²	건폐율 32.3559 %	층수 지하: 1 층/지상: 10 층
	주용도 공동주택	구조 기타구조	건축물 동수 2 동
	최고높이 35.7 m	용적률 195.35 %	연면적 합계 14571.81 m ²
심의내용	구분	주요 심의결과	
	(종합) 분야	제2024-4호 건축구조 전문위원회 심의(변경) '원안의결' 도시과-44467(2024.10.11.)	
심의결과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원안의결 [] 조건부의결 [] 재검토의결 [] 부결		
	*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조건부 의결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		